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희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6인이 공동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-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5329호로 2012년 7월 30일 일부 개정된 것을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로

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,

□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